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9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1나32320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9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김예리, 이용호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

담당변호사 김동우, 박현식, 유선경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, 김규석

변 론 종 결 2021. 8. 19.

판 결 선 고 2021. 9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D[E생]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8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 70%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지분에 관하여 2019. 11. 3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소외 D[E생]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소외 D[E생]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은 2017. 8. 10. 원고에게, 6,900만 원을 2017. 8. 21.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
나. F는 2019. 11. 30.경 사망하였고,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, 자녀인 피고들과 D이 있다.

다. 한편, 망 F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중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그 후 G 및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6. 접수 제2499호로 2019. 11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D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, 주위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는 D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.

나. 인정사실

- 1) 망 F가 사망할 당시 D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, G과 피고들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다음 H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,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(협의분할에 의한 상속)에 첨부되었다.
- 2) G와 피고들은 법무사인 I에게 D의 상속포기 의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설명하고, 이와 관련된 등기업무 등을 위임하였다.
- 3)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정에서 G 및 피고들 뿐만 아니라 D까지 명의자로 포함된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첨부되었고, 그에 따라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 : 갑 제2호증, 을 제3 내지 7호증, 을 제9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]

다. 판단

협이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

동의를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(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8299판결,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).

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D의 동의 없이 D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.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하여 G이 $1/6 (= 1/2 \times 3/9)$ 지분, 피고들과 D이 각 $1/9 (= 1/2 \times 2/9)$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다.

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, D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$1/18$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손원락

부동산의 표시

1. 서울 강남구 J 대 330.7㎡

2. 서울 강남구 J 지상

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
1층 164.45㎡

2층 164.45㎡

3층 164.45㎡

4층 164.45㎡

5층 164.45㎡

지층 165.75㎡, 끝.

